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3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 윤준병ㆍ이용우ㆍ박민규

이원택 • 이해식 • 김정호

조인철 • 박희승 • 문대림

위성곤 · 소병훈 · 전진숙

김성환 • 박정현 • 문금주

서영석 · 정동영 · 최민희

복기왕・김 현・임호선

의원(21인)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아울러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

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비상임 조합장이 지나치게 장기간 연임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돼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 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 다.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 (안 제45조제5항 등).
- 라.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 마.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
- 바.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 사. 도시조합은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의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 아. 중앙회 이사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 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 자.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 심의회를 설치함(안 제125조의5[^]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 조의2 신설).
- 차.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 125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 카.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25조의7 신설).
- 타. 중앙회는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

운용하고, 중앙회에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 파.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자금운용계획 등의 공개 등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5까지).
- 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 거.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조합등과 중앙회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2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6호 중 "간부직원의"를 "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을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 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형의"를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하고, 같은 항제10호 본문 중 "정관으로"를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

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도시조합은 조합원과 도시조합 외의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1항제12호"를 "제45조제5항 중 "선출

한다"를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9조제1항제12호"로, "로, 제57조제2항"을 "로,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출하는"을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으로, 제54조제2항 중 제2호를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로,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11호"로 한다.

제123조제3호 중 "임원"을 "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을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로 한다.

-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 나.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제125조의2제7항 중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 을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를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임원후보자"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임원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 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 1.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 2.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 3.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 4.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 ②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 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1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7(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두다.

- ②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협의회는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 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6조제1항 중 "1명을"을 "1명,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 3명을"로, "28명"을 "31명"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5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이사는 제161조의3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하고, 제125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이사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인사교류심의회) ①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 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가

- 그 의장이 된다.
- 1. 농업경제대표이사
-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
- 3. 제1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 4. 제2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 5.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인사담당 집행간 부
-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 교류의 기본방침
- 2.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규모
-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회는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방침 심의 시참고하여야 한다.
- 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제5항 전단 중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을 "대손보전자금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4조의6(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영) ① 중앙회는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의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 3. 그 밖에 상생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로 조성한다.
 - ④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4조의7(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 3.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 사업부문 집행간부 1명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 가 1명
- 5. 중앙회 전무이사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134조의6제4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계획
- 2. 그 밖에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와 농촌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상호지 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 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 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 ①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금 배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사업부서는 지 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① 중앙회는 자금지원심의회의 결 직후 당해 연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을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마지막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에는 당해연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6조의5(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 조합지원자금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의2제1 항에 따른 조성·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제2항 전단 중 "경영 개선"을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경영 개선"으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25"를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1항"을 ""임원"은 "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원"은 "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50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 후단"을 "'임원"은 "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54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61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41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107조(제44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12조(제59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112조의11,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5조의4, 제125조의7, 제126조, 제130조제4항 및 제6항, 제159조의2, 제161조,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 제2조, 제10조, 제57조의2, 제59조의2, 제107조·제112조(제59조의

- 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34조의6, 제134조의7, 제142조,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
	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
	<u>다.</u>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
력) (생 략)	력)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
	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 (생략)
-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 2. 제45조제5항-----합장의 선출
- 3. 4. (생략)
- ② (생략)
- 략)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 1. ~ 5. (생략)
 - 6. 간부직원의 임면
 - 7. ~ 13. (생략)
 - ④·⑤ (생 략)
 -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생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이사회) ① • ② (생 제43조(이사회)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 6. 준법감시인 및 간부직원의--

- 7. ~ 1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 │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 ⑦ (현행과 같음)
 -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 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 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 ④ (생 략)

-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 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 2. 대의원회가 선출
-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 ⑥ ~ ⑩ (생 략)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 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 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 임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준법 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 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4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집	<u>'</u> }
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ㅎ	<u></u>
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ㅎ	1
<u>당한다)</u> 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3	<u>ح</u>
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긔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u>></u> =
초과할 수 없다.	

- 1. 2. (생략)
- ② (생 략)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적용한다.
 - 1. ~ 6. (생 략)
 - 7. <u>형의</u>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8. 9. (생략)
 -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출자좌수(出資座數)이상의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u>.</u>
1. ~ 6. (현행과 같음)
7. <u>금고 이상의 형의</u>
8. • 9. (현행과 같음)
10
<u>조합원 신분을 2년</u>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
<u>니하거나 정관으로</u>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 12. (생략)

②·③ (생 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 저 성·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 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 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 ⑥ 삭 제

<u>선거일 공고일 현재</u>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
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45조제5항</u>

- ⑦・⑧ (생략)
-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생략)
 -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 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 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 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 3. (생략)
 - ③ ④ (생 략)
-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 (7) · (8) (현행과 같음)
-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 2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있다.
 - ⑥ 도시조합은 조합원과 도시조 합 외의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 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

<신 설>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 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 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 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 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 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u>제49조까지,</u>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u>제58조부터 제6 0조까지</u>, 제62조부터 제65조까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도 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도시 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 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 총이익의 3%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제44조까 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 9조까지----------제58조, 제59 조, 제59조의2, 제60조-----

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 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 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 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 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 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 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 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 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 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 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 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 바목 · 사목 · 차목, 제3호마목 · 사목 · 아목, 제5호가목 · 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 바목 · 아목, 제3호마목 · 사목 · 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생략)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u>제58조부터 제60조까지</u>,

(② (현행과 같음)
제.	112조(준용규정) ①
	제44조까지, 제44
· · · · · · · · · · · · · · · · · · ·	제44조까지, 제44
· · · · · · · · · · · · · · · · · · ·	제44조까지, 제4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 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 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 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 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 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 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 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 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 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 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 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 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 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

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를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
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
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u>로, 제49조제1항제12호</u> <u>로,</u>
<u>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u>
에 따라 선출하는"을 "조합원
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
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에
<u>따른"으로, 제54조제2항 중 제2</u>

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 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 바목 • 사목 • 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 가목 · 나목, 제7호 및 제10호" 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 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 한다) • 마목 • 사목, 제4호(복지 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 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 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 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 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 1호"로, 제80조 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 (생략)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 저 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 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

호를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
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
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
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로, 제57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베112조의11(준용규정) ①

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 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 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 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 항, 제68조제1항 · 제2항, 제69 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 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 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 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 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 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 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 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 우에는 조합원 · 사원 등 그 구 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 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 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u>같</u> 은 조 제3항제6호, 제11호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 · 분할 또는 품목조합 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 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 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 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 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 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 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 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 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 (생략)

-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1. 2. (생략)
 -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 5. (생략) 제125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하다.

1. ~ 5. (생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u>.</u>
1. • 2. (현행과 같음)
3. 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u>.</u>
1. ~ 5. (현행과 같음)

-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 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 이사

나.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

- ③ ~ ⑤ (생 략)
-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 ① ~ ⑥ (생 략)
-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⑧ (생략)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생략)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7) (현행과 같음)

-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 ②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 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 ⑧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 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 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여 야 한다.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

회를 둔다.

1.~4. (생략)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1. • 2. (생략)

③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에서 "위원회"라 한다)-----1.~4.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 | 람(이하 이 조에서 "임원후보 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 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 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

- 1.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임원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 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 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 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8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자 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 개모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응모한 사람을 대 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 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 1.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 2. 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 3. 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

 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

 소
- 4.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 소
- ②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그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

④ (생 략) <신 설>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 제126조(임원) ① -----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

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7(운영협의회의 설치・ 운영) ①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 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 ②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 로 구성한다.
- ③ 운영협의회는 특정한 회원 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 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 어야 한다.
- 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 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 다.
-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사 1명 및 전무이사 <u>1명을</u> 포 함한 이사 <u>28명</u> 이내와 감사위 원 5명을 둔다.

② (생 략)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서 신설>

⑤ (생략)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서 신설>

<u>1명, 제125</u>		
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 3명		
<u>을</u> <u>31명</u>		
② (현행과 같음)		
데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5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이		
사는 제161조의3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하고, 제125조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이사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u></u>		
<u>다만, 제125조제2항제6호</u>		

⑦ ~ ① (생 략) <u><신 설></u>

- 에 따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⑦ ~ ① (현행과 같음)
- 제131조의2(인사교류심의회) ①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 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 1. 농업경제대표이사
 - 2. 사업전담대표이사등
 - 3. 제1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 간부
 - 4. 제2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 간부
 - 5.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인사담당 집행간부
 -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

제134조(사업) ① ~ ④ (생 략)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
 ⑤ -----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 2.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규모
-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회는 중앙회와 지주회사 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사업부문간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 방침 심의 시 참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⑥ 심의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 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4조(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 (5) -----

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u>대손보전자</u>금, <u>조합상호지원자금 및</u>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따른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u><삭 제></u>

제134조의6(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영) ① 중앙회는 도시 조합이 도시조합 외의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상생지원 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

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 3. 그 밖에 상생협력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 자금은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 상생사업비로 조성한다.
- ④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 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 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4조의7(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상생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 3.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 사업부문 집행간부 1명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 부전문가 1명
- 5. 중앙회 전무이사가 추천하는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 의결한다.
- 2. 그 밖에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와 농촌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 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

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 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 ①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금 배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사업 부서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 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①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는 자금지원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
-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① 중앙회는 자금지원시의회 의결 직후 당해 연도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 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신 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 략)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배분기준 등을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 지하고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마지막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에는 당해연도 사업별・조 합별 총 지원규모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 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 석 및 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 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 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 의2제1항에 따른 조성·운용V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 같음)

(2) -----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하면,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및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생 략)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u>제59</u> 조의2에 따른 도농상
생사업비 납부, 경영 개선
③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u>1000분의 50</u>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 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 조, 제18조, 제20조제2항 · 제3 항, 제21조제4항 · 제5항, 제21 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 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 • 제3 항 · 제4항, 제29조제1항, 제30 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 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 42조제3항 단서 · 제4항 · 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 • 제1 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 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 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 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1항 · 제2항제1호 · 제4항, 제5

,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준용규정)

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 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 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 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 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 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 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 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 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 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 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 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 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사업전담 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 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 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 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 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 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 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 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 장"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 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 원"으로, 제54조제1항 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
외한다)"으로,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원"은 "임원(제125
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50조제1항
<u> "임원"은 "임원(제125조제2항제</u>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 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 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 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 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 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 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 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 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 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 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 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 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
으로, 제54조제1항 후단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 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사업 평가)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한다. <후단 신설>

② ~ ⑥ (생 략)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

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거에 관여한 자
- 2. ~ 4. (생략)
- ② ~ ④ (생 략)

에 따른 평가 및 점검을 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조(벌칙) ①	

- 1. <u>제7조제2항을</u> 위반하여 공직 1. <u>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u>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